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65 개정 업데이트

aT LA지사

□ 배경

- 공식 명칭 :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해물질 노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으로,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아님
 - 목록상의 화학물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제정되어, 변경 혹은 폐기가 불가능함

□ 규정 적용 대상

-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 비즈니스 소재지와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
 - 온라인 쇼핑몰도 캘리포니아로 배송되는 제품에는 Proposition 65가 적용됨
 - ※ 제품 표시 페이지에 ‘경고’ 단어를 사용해 웹사이트 링크로 경고문구 제공
 - 직원수 10명 이하의 소기업과 정부기관은 면제 대상이지만, 직원수 10명 이하의 제조업체가 직원수 10명을 초과하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면 규제가 적용됨

□ 새로운 개정사항

- 2018년 8월 30일부터 새 경고문 시행
 - 소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새로운 경고문 제공
 - : 경고 제공 방법 및 장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내려짐
 - 발암 유발, 선천적 장애, 기타 생식기능 손상 등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소비자와 식품에 대한 ‘확실하고 적절한’ 경고를 의무화
 - Proposition 65 화학물질과 그 수치(Level)에 대한 리스트 (‘18.05.25 업데이트)
 - :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 영어 이외 다른 언어

- 제품 라벨에 영어 이외 다른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Proposition 65 경고문 또한 해당 언어로 기재되어야 함
- Proposition 65 한국어 번역문 샘플 확인

<https://www.p65warnings.ca.gov/sample-warnings-and-translations-businesses>

The screenshot shows the Proposition 65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logos for CA.GOV, Proposition 65 (with the slogan 'Your right to know!'), and OEHHA (Science for a Healthy California). Below the logos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Home, About, Listed Chemicals, Fact Sheets, Products & Places, For Businesses, and Contact 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For listed carcinogens' and features a language selection menu with options: English, Spanish (Español), Cambodian (ខ្មែរ), Chinese Simplified (简体中文), Chinese Traditional (繁體中文), French (Français), Hmong (hmoob), Korean (한국어), Tagalog, and Vietnamese (Tiếng Việt). A warning icon and text in Korean state: '경고: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알려진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P65Warnings.ca.gov에서 확인하십시오.' To the right, there is a search bar and a 'Quick Links' section with link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Law & Regulations', 'Recent Amendments to the Warning Regulations', 'Fact Sheets', and 'Glossary'.

○ 예외 사항

- Proposition 65 2008년 9월 규정을 준수하는 경고 라벨이 부착된, 2018년 8월 30일 이전 제조 제품
 - 법원에서 승인된 합의 협정에 해당되거나 Proposition 65 리스트 중 ‘Safe Harbor’ 수치 아래에 있는 제품
- ※ Safe Harbor 수치가 없는 경우 경고문 의무화

◎ Safe Harbor levels

- 경고 필요성 여부와 식수원으로서의 화학물질 방류 금지 여부에 대해 사업체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고자 OEHHA 에서 설정한 수치
- Safe Harbor 수에는 발암 유발 화학물질에 대한 ‘No Significant Risk Levels’ 과 선천성 장애 또는 기타 생식 기능 손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Maximum Allowable Dose Levels’가 포함됨

□ 법적 책임의 이동

- Proposition 65의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 하나로, 공급망 내 법적 책임 이동으로 소매업체의 부담을 줄임
 - 제조업체, 생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에 주된 의무
-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업체는 Proposition 65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
 - ① 상부업체(제조, 생산, 유통 등)에 의해 제공된 경고문을 전달하지 않거나 경고문 확인이 어렵도록 만든 경우
 - ②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추가되도록 하였거나, 판매하는 브랜드가 자사 브랜드인 경우
 - ③ 화학물이 해를 입힐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상부업체에 법적 책임이 없는 경우
- 또한, 소매업체가 상부 제조업체(생산, 포장, 수입, 공급, 유통 등)과 ‘indemnity agreement’(면책/손해배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상 소매업체가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효한 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하면, 법원에서 계약 상 보호 대상인 소매업체를 상대로 한 클레임을 기각 시킬 수 있음
 - ※ indemnity agreement의 경우 상부업체들간의 계약상 제외로, Proposition 65의 의무사항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님
- 상부업체의 Proposition 의무사항 충족방법
 - 소비재와 함께 경고라벨 제공
 - 에이전트를 통해 포장, 수입, 공급업체 등에 경고문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소매업체 및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해당 경고가 전달되도록 확인하는 절차 진행을 통해 Proposition 65 의무사항 충족

※ OEHHA 의 웹사이트 Q&A

Q: 소비재 제조사 또는 생산업체가 소매업체에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소매업체에게 경고문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A: 소매업체에게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소비재 제조사의 경우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함







- 1) 의무화되는 경고문을 해당 제품에 라벨로 부착하거나
- 2) 포장업체 또는 수입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에 경구문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경고가 소매업체와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

제조업체 또는 생산업체는 해당 경고가 소매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도록 확실히 해두기 위해 공급망에 있는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음 Occupational warnings(작업상 피폭 경고), food warnings(식품 경고), internet and catalogue warnings(인터넷 및 카탈로그 경고)는 각각 별도의 의무 사항들이며 해당 경고가 요구되는 곳에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소비재 경고문 (Warnings - Consumer Products)

- 발암 또는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한 가지 이상인 경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을 명시해야 함
- 해당 화학물질의 이름이 경고문에 사용되어야 하며, 약어는 해당 이름을 명시한 이후부터 사용 가능
예) DEHP가 포함된 소비재의 경우, 경고문에는 반드시 Di(2-ethylhexyl) phthalate라고 우선 명시한 후, 약어인 DEHP를 나머지 내용에 사용
- 노란 경고기호를 표시해야 함
- The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 샘플 경고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고 적절한’ 경고문인지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 권고
- 경고문 내 폰트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품에 기재된 다른 정보들과 함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작성해야 함

| | |
|---|---|
| For listed carcinogens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 |
| For listed reproductive toxicants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 |
| For listed carcinogens and listed reproductive toxicants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 |
| For chemicals listed as BOTH a carcinogen and reproductive toxicant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 |
| For a single listed carcinogen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 |
| For a single listed reproductive toxicant |  WARN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 . |

□ 소비자 약식 경고문 (Short Form Warnings- Consumer Products)

- 소비자 라벨에 적합한 약식 경고문으로, 노란 경고 기호 포함 의무
- 소매점 내 선반 경고문으로 사용 불가
- 제품의 다른 소비자 정보와 동일한 폰트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으나, 최소 6포인트 사이즈 이상을 사용해야 함

| | |
|--|--|
| For cancer causing chemicals |  WARNING: Cancer - www.P65Warnings.ca.gov. |
| For reproductive harm causing chemicals |  WARNING: Reproductive Harm - www.P65Warnings.ca.gov. |
| For cancer and reproductive harm causing chemicals |  WARNING: Cancer and Reproductive Harm - www.P65Warnings.ca.gov. |

□ 인터넷 및 카탈로그 경고문 (Internet and Catalog Warnings)

- 제품 라벨 이외의 경고문 필요
 - 제품이 온라인, 카탈로그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제조사 및 상부 업체들은 소매업체에 인터넷과 카탈로그 경고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온라인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제품이 판매될 때 어떠한 경고 내용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알려야 함
- 인터넷 경고문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단계에, ‘소비재 경고문’이 제공되어야 함
 - 웹사이트 경고문은 제품에 부착되는 경고문 라벨을 하이퍼링크를 통해 제공하거나, 해당 라벨의 사진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제품 라벨에 약식 경고문이 제공되는 경우, 웹사이트 경고문과 해당 라벨 경고문이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카탈로그 경고문
 -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단계에, ‘소비재 경고문’이 제공되어야 함
 - 제품 라벨에 약식 경고문이 제공되는 경우, 웹사이트 경고문과 해당 라벨 경고문이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
 - 제품이 리스트 되어있는 근처에 경고문 전체가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경고 기호와 링크만 제공하는 것은 새 규정에 위배되며, 별도의 제품 매뉴얼에 제공되는 경고문으로는 새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

□ 식품 섭취 경고문 (Warnings- Food Exposure)

- 소비재 경고와 다른 경고문으로, 노란 경고 기호 의무 사항 아님
- 식료품 라벨에 제공되어야 하는 경고문의 경우, 포장에 동봉 되어 있어야 하고, 주위 다른 정보와 떨어져 구별되어야 함

| | |
|--|---|
| For listed carcinogens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 |
| For listed reproductive toxicants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 |
| For listed carcinogens and listed reproductive toxicants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 |
| For chemicals listed BOTH as a carcinogen and listed reproductive toxicant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chemicals including [name of one or more chemicals], which is [are]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 |
| For a single chemical listed as a carcinogen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 |
| For a single chemical listed as a reproductive toxicant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 |
| For a single chemical listed BOTH as a carcinogen and listed reproductive toxicant | WARNING: Consuming this product can expose you to [name of chemical], which is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P65Warnings.ca.gov/food . |

□ 기타 경고문

- 알콜음료, 디젤 배기가스 엔진, 가구제품, 승합차 및 비포장도로용 차량, 레저용 선박, 나무가루, 전자담배 등에 별도의 경고문 의무화
-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를 규제하는 환경 노출 및 작업상 피폭에 대한 별도의 경고문 확인 → <https://www.p65warnings.ca.gov>
- 부속제품 (Component Products)
 - 제조사 (manufacturer or formulator)에 판매되는 부속품 또는 재료, 원료 등을 말하며 이 또한 Proposition 65 의 규제 대상
 - 부속품 또는 재료가 작업 재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공급 업체는 제조사에 작업상 피폭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식품 경고를 제공해야 함
 - 해당 경고는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제공해야 함
 - : 공급 업체의 경우 대량으로 판매되는 공급재가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새 규정에서는 소비자 경고가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 의무를 제조사(manufacturer or formulator) 에 두고 있음

※ OEHHA 의 웹사이트 Q&A

Q: 부속품 또는 재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다른 제조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경고 제공의 의무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특히, 지정된 화학물질이 최종 제품에 어느 정도의 농도로 들어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 되는지에 따라 경고문 필요성의 여부가 다른 경우는 어떤가?

A: 해당 부속품 제조/공급 업체가 지정된 화학물질이 부속품 또는 재료의 최종 사용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소비자 경고에 대한 책임만 있음. 예를들어 식품 원료 제조사가 해당 원료가 특정 형태로 가공 식품에 사용될 것이며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해당 식품 원료 제조사는 제품 제조사에 경고문을 제공해야 함. 제품 제조사가 경고가 필요한 수치의 화학물질이 제조하는 식품에 노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노출 여부가 확인되면 제품 제조사에게 고객 또는 소매업체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

출처 : OEHHA 및 Law Group 자문